

#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

중소·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을 위한 정책성 공제

**청년에게는**  
장기재직과 목돈마련을!

**기업에게는**  
인재육성과 세제혜택을!

## 참여대상 및 지원내용

### 가입기업에게는 납입금에 대한 전액손비 인정 및 일반인력개발비 25% 인정

기업: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상 중소기업  
\* 유흥주점업,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
\* 국제채납기업, 휴·폐업 기업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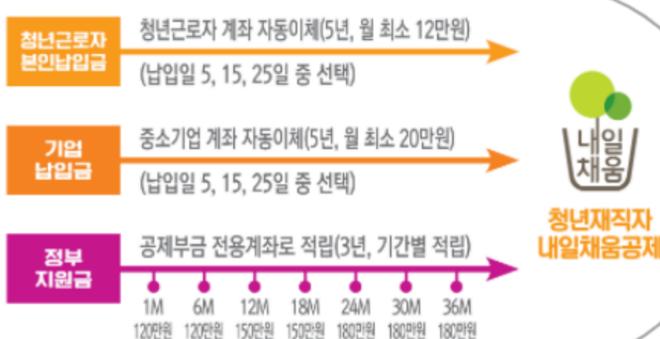


### 가입청년에게는 공제만기(5년) 시 적립금 전액(3천만원 수준)을 지급

청년: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근로자 \*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(최대 만39세)  
\* 사업주(대표자)의 특수관계인 제외  
①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
② 위 ①의 배우자, 직계비속, 형제·자매 관계에 있는 자

### 가입기간: 5년 (60개월) 적립금액: 3천만원 수준

청년: 5년간 720만원 적립 (월 최소 12만원)  
기업: 5년간 1,200만원 적립 (월 최소 20만원)  
정부: 3년간 1,080만원 적립 (3년간 7회 분할 적립)  
\* 공제금 지급이율: 연 복리(분기별 변동금리, 홈페이지에 금리 게시)



청년근로자 납입금 720만원 + 기업 기여금 1,200만원 + 정부지원금 1,080만원

5년 만기

청년근로자 납입금 + 기업 납입금 + 정부적립금 + 만기이자  
⇒ 청년근로자 전액 수령

### 기업 혜택

-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전액 손금(법인) 또는 필요경비(개인) 인정
-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
- 당기발생액의 25% 또는 증가발생액(당기발생액-전기발생액)의 50%
-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: 중소기업부 49개 지원사업 평가 또는 선정 시 우대
- 근로자를 최소 5년 이상 고용 유지 및 우수인력 유입으로 기술 축적  
\* 단, 청년의 귀책으로 공제 해지 시 기업 납입금은 전액 기업에게 환수됨

### 청년 혜택

- 만기(5년)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(세전) 수령
- 공제금 수령시 기업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% 상당 세액 감면
- 12개월 이상 가입 유지시 단체상해보험 가입가능
- 핵심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

## 지원절차 안내



온라인신청 -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([www.sbcplan.or.kr](http://www.sbcplan.or.kr))

온라인 신청 시 수행기관 "주식회사 조인스잡"으로 선택

(주)조인스잡 ☎ 031-647-6995 홈페이지: [WWW.JOINSJOB.CO.KR](http://WWW.JOINSJOB.CO.KR)

##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

### 1 중소기업 기여금[납입금]에 대한 세제혜택

◆ 중소기업 기여금(납입금)에 대해 **비용인정 ① + 세액공제 25% ②**  
→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**최소 31% ~ 최대 67% 절세효과**

- ① (비용인정) 손금(법인기업) 또는 필요경비(개인기업) 인정
- ② (세액공제)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, 당기 발생액의 25% 또는 증가 발생액 (당기 발생액-전기 발생액)의 50%

\* 증가발생액(당기 발생액-전기 발생액)의 50% 적용할 경우 절세율이 높아짐

#### □ 과세표준구간별 절세 효과 예시

**【가입예시】** 月 25만원 x 4명 가입, **중소기업에서 年 1,200만원 납입**  
**【절세효과】** **최소 372만원(31%)에서 최대 804만원(67%) 절세효과 발생**

구분	과세표준	절세율*			1,200만원 납입 時		
		법인(소득) 세율(a)	세액 공제율(b)	절세율* (c=a+b)	절세금액	실제부담 액	계
법인 기업	2억원 이하	10%	25%	35%	420만원	780만원	1,200만원
	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	20%		45%	540만원	660만원	1,200만원
	200억원 초과 3,000억원 이하	22%		47%	564만원	636만원	1,200만원
	3,000억원 초과	25%		-	-	-	-
	개인 기업	1,200만원 초과	6%	25%	31%	372만원	828만원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5%	40%	480만원		720만원	1,200만원	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4%	49%	588만원		612만원	1,200만원	
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35%	60%	720만원		480만원	1,200만원	
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8%	63%	756만원		444만원	1,200만원	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0%	65%	780만원		420만원	1,200만원	
5억원 초과	42%	67%	804만원		396만원	1,200만원	

\*법인세, 소득세에 대한 절세효과 (지방소득세 미포함)